

도로정비서비스국(Bureau of Street Services, BSS)은 로스앤젤레스시(시)의 시의회 문서번호 13-1493-S5호 거리 노점상 조례와 관련하여 공공 통행로에서의 거리 노점상을 위한 다음 일반 규칙 및 규정을 마련했다. 2019년 1월 1일 자로 모든 거리 노점상은 본 규칙들에 적용된다.

1. **쓰레기:** 모든 식품 노점상 카트 또는 키오스크는 이러한 카트 또는 키오스크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큰 쓰레기통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노점상 카트 또는 키오스크는 이러한 카트가 이동하기 전 카트 또는 키오스크 반경 50피트 이내에서 이러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 모든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기타 쓰레기로부터 분리하여 현재 로스앤젤레스시(시) 재활용 정책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2.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거리 노점상 및 파머스 마켓 상인들은 LAMC 제3조 XIX장을 준수해야 한다.

3. **설치:** 어떠한 노점상 카트 또는 키오스크의 설치, 사용 또는 유지로 인해 시민 또는 재산의 안전이 위협해지는 경우, 또는 이러한 위치 또는 장소가 공공서비스 목적으로, 대중교통 목적으로 또는 기타 정부 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카트 또는 키오스크가 불합리하게 보행자 또는 차량 통행, 어떠한 거주지 또는 사업장으로의 출입, 또는 기둥, 표지판, 진입로, 교통 표지판 또는 신호등, 소화전, 우편함, 또는 언급된 장소에서 또는 근처에서 허가된 기타 사물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 그 누구도 인도 또는 공원으로 위, 안 또는 넘어서 어떠한 노점 카트 또는 키오스크를 설치, 사용 또는 유지해서는 안된다 인도에서의 보행자 통행을 위한 공간이 폭 5피트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어떠한 노점상 카트 또는 키오스크도 위치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이동식 또는 거리 노점상도 제품, 상품, 식품 또는 모든 종류의 판매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해 제공된 물품이 있는 장소에 또는 그 근처에 사람들이 모이는 원인이 되어 어떠한 인도, 도로, 거리, 골목 또는 모든 기타 공공 장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 a) 다음 지상 시설물(above ground facilities, AGF)로부터의 거리는 3피트보다 가까워서는 안된다:
 - (1) 가로등
 - (2) 나무 주변 구멍의 가장자리
 - (3) 주차요금 징수기
 - (4) 지상 공공시설 구조물
 - b) 소화전으로부터의 거리는 적어도 5피트를 넘어야 한다.
 - c) 모든 기존 지하 공공시설 박스, 밸브 또는 공간으로부터의 거리는 2피트보다 가까워서는 안된다.
 - d) 도로 경계석의 앞면 및 기존 진입로의 가장자리로부터의 거리는 18인치보다 가까워서는 안된다(그림 1 참조).
 - e) 노점상간 거리는 빈 공간으로 3피트여야 한다(그림 2 참조).
 - f) 버스 정류소 위치 또는 도로 시설물(벤치, 자전거 거치대), 신문 가판대 및 붉은색 도로 경계석(그림 3 참조)과 같이 지상 편의시설이 기존에 놓여 있는 장소에서는 노점 공간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 g) 어떠한 노점 공간도 차도, 중앙선, 보행자용 안전지대 및 자전거 도로에는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 h) 어떠한 고정식 노점 장소도 모든 건물 바로 앞에 직접 위치하지 않는다. 모든 고정식 노점 장소는 도로 경계선 앞면에서 18인치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 i) 건설 관련 도로 또는 차선 폐쇄, 특별 행사, 중고품 시장, 촬영 및 파머스 마켓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승인된 활동으로부터의 거리는 승인된 활동의 경계선상으로부터 500피트보다 가까워서 안된다.
- j) 모든 건물, 가게, 극장, 영화관, 예배당 또는 대중이 모이는 장소의 입구로부터의 거리는 최소 20피트가 되어야 한다.
- k) 로스앤젤레스시 규정(Los Angeles Municipal Code) 42.13(c)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한된 노점 장소로부터의 거리는 제한된 장소의 모든 경계선으로부터 500피트보다 가까워서 안된다.

4. 노점 금지 장소:

- a) 다음 장소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노점은 금지된다:
 - (1)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및 엘 푸에블로 드 로스앤젤레스 역사공원, 스테이플스 센터/LA 라이브(로스앤젤레스시 법규 제22부 제25장에서의 설명과 같음),
 - (2) 행사가 있는 날 다저스타디움, 할리우드 볼 및 LA 콜로세움/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 (3)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및**
 - (4) 기타 공공사업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판매 장소.
- b) 베니스 비치에서의 노점상은 1차 수정안 표현 활동 보호로 제한된다.
- c) 학교 또는 중학생이 다니는 모든 고등 교육 시설 또는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시설.

각 장소에 대한 지도는 경계를 나타낼 것이다. 노점상 금지 구역이라는 적절한 표지가 이러한 장소에 게시될 것이다.

5. **생산품 판매:** 캘리포니아 식품농업부(California 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CDFA)가 관리하는 모든 생산품은 기존에 있는 또는 때때로 수정되는 모든 CDFA 규정에 따라 취급, 이동, 진열 또는 처리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a) CDFA에 의해 격리된 모든 생산품 및 물품은 병충해 방지를 위해 봉지에 넣거나 차단되어 공인된 방법으로 지키고 보호될 것이며 모든 공개 진열은 금지된다.
- b) 모든 생산품, 물품 또는 이러한 물품의 겹겹질, 속, 껍질 또는 씨는 처리 전 플라스틱 봉지 안에 밀봉되어야 한다.
- c) 모든 식품 노점상은 영수증, 인보이스, 선하증권 또는 격리된 모든 생산품 또는 물품에 대한 기타 수용할 수 있는 원산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
- d) 판매, 판매를 위해 내놓은, 또는 격리된 지역 내에서 배송된 모든 격리된 생산품 또는 물품은 상업상 원산지여야 한다.
- e) 본 조항에 대한 어떤 위반이라도 생산품 또는 물품의 압류로 이어질 수 있다.

- 허가증: 모든 도로 노점들은 주, 카운티 또는 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해당되는 사업, 세금 및 건강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Diagram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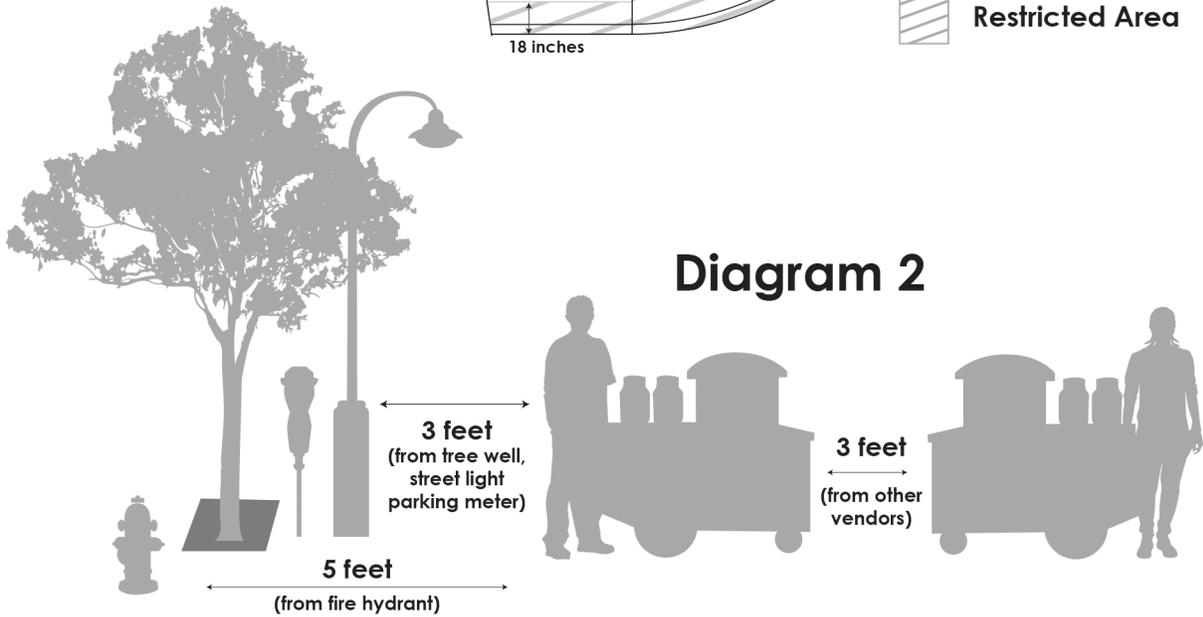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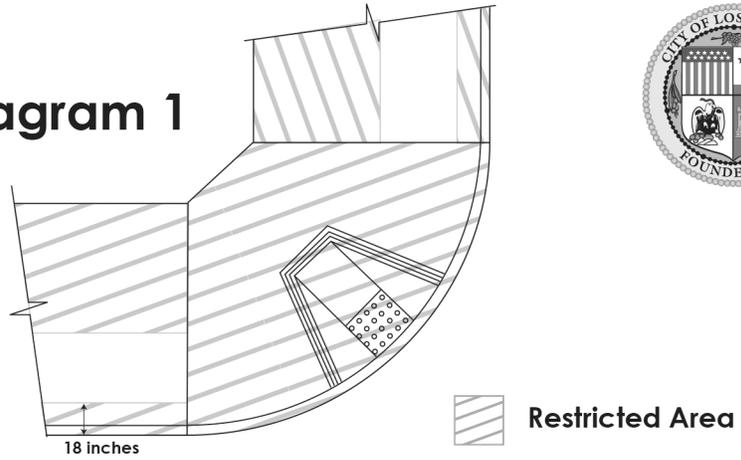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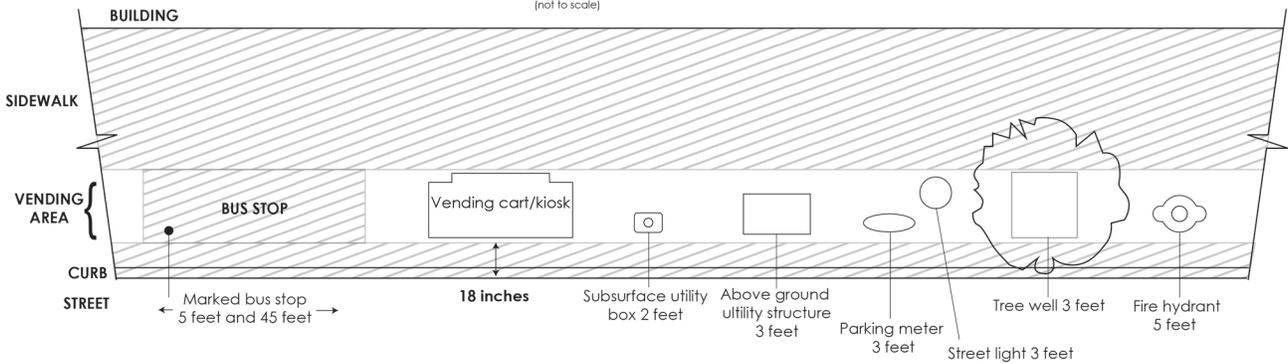


Diagram 3
(not to scale)



<https://streetsla.lacity.org/vending>
213-847-6000